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95호

2015. 9. 25(금)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185호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남원시 조례 제1186호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남원시 조례 제1187호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 남원시 조례 제1188호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35
- 남원시 조례 제1189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남원시 조례 제1190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43
- 남원시 조례 제1191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남원시 조례 제1192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4
- 남원시 조례 제1193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60
- 남원시 조례 제1194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 남원시 조례 제1195호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 남원시 조례 제1196호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554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10
- 남원시 규칙 제555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2
- 남원시 규칙 제556호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120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346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125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15-66호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사..... 127

지 침

- 남원시 예규 제14호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129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85 호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를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중 “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을 “”종합기술용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통신·전기”를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를 “위원은”으로, “자 중에서 시장”를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

제한 수 있다.

제4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용역실명제 등)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실·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3(학술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의4(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남원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국·도비”를 “국비·도비”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중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은 예산의 범위”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를 “심의 업무에 관한 위원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u>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u>뜻은</u> -----.</p>
<p>1. <u>"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u></p>	<p>1. <u>"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u></p>

도·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통신·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

-----.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
-----.

5. <삭 제>

제3조(구성) ① 남원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을 당연직 위 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장이 추천 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 설>

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 무국장과 안전경제건설국장은 각각 소관사무에 관한 용역과제 를 심의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② ----- 호선(互選)한 다.

③ -----위원은----- 사람 중에 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④ 위촉직 ----- .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삭 제>

제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5.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용역실명제 등) ① 용역 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실·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3(학술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

<신 설>

제5조(심의시기)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용역비에 계상되지 않는 공사설계 등의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② (생략)

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의4(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남원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심의시기) -----
-----.

-----국비·도비-----

-----.

제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며, 서
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③ -----소집할 ---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
다.

-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
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
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
려운 경우

제8조(간사 등) ① -----
-----1
명 -----.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
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
다.

제10조(회의록) -----회의록
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

-----.

제11조(수당 및 여비) -----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
 은 예산의 범위 -----

 -----조례-----
 -----.

제12조(비밀엄수) -----심의
 업무에 관한 위원 및 그 밖에 -

 -----.

제13조(시행규칙) -----시
 행에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86 호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제8조에 따른 도로(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
함)”를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이외”를 “외”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해촉”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어려
운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발
생할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상정하고자 할”을 “상정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
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받은 때”를 “받은 경

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에서 「남원시」를 “범위에서 「남원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 및 제14조”를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또는 보수 하고자 할 때”를 “또는 보수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산”을 “더”로 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어려울 때”를 “어려울 경우”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7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갱신하고자”를 “갱신하려고”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징수하며, 시 수입증지로 징수 할 수 있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 공간정보”를 “자는 공간정보를”로 한다.

제28조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사용료 및 수수료 (제27조제2항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지도(1/1,000)벡터 데이터(Vector Data)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p>	<p>CD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력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지도(1/1,000) - 수치정사사진(1/1,000)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p>	<p>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p>

※ 표 외의 축척 도면은 인접 축척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1/5,000축척 미만의 도면은 1/5,000 축척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 (제25조제3항 관련)

청구인 (위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법인)		직 위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법인)		직 위	
	위임인과의 관 계		위 임 사 유	
공간정보의 내용				

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남 원 시 장 귀하

10. ~ 16.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생 략)

제11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10. ~ 16.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

-----경우에는 위촉 해제-----.

- 1.-----
-----어려운 경우--
- 2.-----위촉 해제-----
-----발생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

-----상정할-----

-----.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④ (생략)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위해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6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

-----긴급한-----

② -----

-----받은 경우-----

-----긴급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

-----범위에서 「남원시

제15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

-----「국가공간정보 기본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

조 및 제21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

-----제32조-----

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
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항상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
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
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도시기준점) ①·② (생
략)

③ 도시기준점을 설치·이전 또
는 보수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설치·이전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단, 설치·이
전 또는 보수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기준점의 설치·이전 또
는 보수에 따라 부담하는 비
용은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공
공측량 성과심사비를 가산하
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⑤ (생략)

-----.

② -----

-----마련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도시기준점)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또는 보수할 경우-----

-----.

④ -----

-----던-----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② (생략)

③ 현업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 등)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시공자로부터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 준공계 접수 시 공간정보 변동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4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② (생략)

제19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어려울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생략)
- 2. 도로기반시설물 전담부서·현업부서·유관기관이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신속히 갱신하고자 요청하여 제공되는 경우

제26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생략)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갱신하려고

제26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가-----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③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시 수입 증지로 징수 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받기 전에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 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정이 변 경되어 관계 정보를 반납하더라 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
-----부과·징수한다.

④ -----
자는 공간정보를 -----
-----.

제28조(수수료의 반환) -----
-----자가-----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87 호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 관할구역”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밖에”를 “밖의”로, “중요”를 “중요한”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를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변경으로 인한”을 “변경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할 때”를 “조사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할 경우”로 한다.

제11조 중 “중요”를 “중요한”으로, “등에게”를 “등에”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등에 대해서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이외”를 “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u>」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원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 ----- ----- ----- ----- ----- ----- -----</p>
<p>제2조(기능) 남원시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p>	<p>제2조(기능) ----- ----- -----<u>심의·의결한다</u>.</p>
<p>1. (생략) 2. <u>시 관할구역</u>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u>밖에</u> 지명에 관한 <u>중요</u> 사항</p>	<p>1. (현행과 같음) 2. <u>남원시</u>(이하 “시”라 한다) <u>관할구역</u>----- 3.----<u>밖의</u>-----<u>중요</u> <u>한</u>----</p>
<p>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시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남원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u>호선(互選)</u>한다. ③ ----- -----</p>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
명 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
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지명의 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
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
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간 기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위
촉직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
로 하며 특정 성이 6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않아야-----.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촉 해제-----
-----.

제10조(지명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변경에 따른-----

-----.

③ -----

조사할 경우-----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④ -----

-----인
정할 경우-----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중요한-----

-----등에-----

-----.

제12조(수당 등) -----

-----등은-----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외-----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88 호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지역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2.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3. 바래봉 철쭉제
4. 봉화산 철쭉제
5.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

제4조(지역축제의 육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축제 관광의 발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제관련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축제에 조예가 깊은 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

나. 문화예술·축제·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다.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개최결과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 지역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2. 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이 질병, 장기간 출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자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개최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자는 지역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지역축제 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시장은 해당 연도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

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와 별도로 축제관광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 및 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89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삭 제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삭 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p> <p>2. (생 략)</p>	<p>제10조(수수료 감면) ① ----- ----- ----- -----.</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p> <p>2.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u>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u> <u>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u></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삭 제</u></p>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 5. (생략)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90 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 등”이란 기업·기업인·근로자·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6.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인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 제4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대상)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및 전라북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이나 근로자

-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 등
-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 3.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에 의해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기업윤리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 공무원에게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

제9조(근로자 복지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수혜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10조(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문화 활동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상호 간 협력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기업 활동 촉진

제12조(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운영 및 설비투자
2.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인력양성
3.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산업 단지 조성 및 기술 개발
4.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5. 국제화 추진을 위한 수출입 진흥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
6. 자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7.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제13조(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등의 제품 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품 구매 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관내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설치)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이하 “사이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센터는 알림마당, 기업지원정보, 기업정보, 지역경제, 취업정보,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하며, 기업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③ 사이버센터에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업 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제5장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제15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기업 관련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지, 창업, 각종규제 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
2. 기업애로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문가와 기업 후견인제 운영
3. 인력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지원 사업 발굴
4. 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 등

제17조(기업도우미 배치) ① 시장은 기업의 경영전략, 사업분석,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생산관리 등 컨설팅을 위하여 변호사, 대학교수, 경제계, 금융계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기업 컨설팅에 참여한 실적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기업활동지원 협의회 운영

제18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 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시 의회 의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4조(수당지급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91 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
- 마.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항방물자 지원대책
- 바.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중요시설, 목진지 등)
- 사.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체육관, 학교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협회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p> <p>가. ~ 다.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3. ~ 5. (생략)</p>	<p>제4조(협회의회의 심의사항)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u>라.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u></p> <p><u>마.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u></p> <p><u>바.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 유선 지원대책(중요시설, 목진지 등)</u></p> <p><u>사.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 (체육관, 학교 등)</u></p> <p>3. ~ 5.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92 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공동이용관리 및 편의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운영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용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용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용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원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93 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 지역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빈집”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3.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의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2.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94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 제43조의3”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로 한다.

제2조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 한 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중 “① 공”을 “공”으로 하고, “이전년도”를 “이전 연도”로 하며,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65㎡미만”을 “65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를 “공동급수시설, 공동출입문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경로당 보수

1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시설의 개수·보수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중 “지원하고자 하는”을 “지원하려는”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 때”를 “하려는 경우”로, “거쳐”를 “한 후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결정된 때”를 “결정된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공동주택”을 “시장은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2명과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1명

제5조제4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업무 담당주사가”를 “주택업무담당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을 “한 번만 1개월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하고자 하는”을 “연장하려는”으로, “입증”을 “증명”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완료한 때”를 “완료한 경우”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를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제3항제4호 중 “주택관리관련”을 “그 밖에 주택관리”로, “경험이 있고 덕망”을 “경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능)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11조제2항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업무 담당주사가”를 “주택업무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를 “간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된 때”를 “작성된 경우”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결을 거치지”를 “의결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분명한 때”를 “불분명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건인 때”를 “사건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계류 중인 때”를 “계류 중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제16조 제1항 제6호 중 “성립된 때”를 “성립된 경우”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수락한 때”를 “수락한 경우”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부결된 때”를 “부결된 경우”로,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수락한 때”를 “수락한 경우”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과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에 대하여”를 “부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개최한 때”를 “개최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를 “위원회의 조정사항은”으로, “전원이”를 “모두가”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을 “사람으로 시장이 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27조 중 “명시되지”를 “규정되지”로 한다.

제28조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를 “조례 시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제14조 관련)				
분쟁대상 아파트명	아파트명		관리 사무소 전화번호	
	위 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input type="checkbox"/> 제14조 제1항 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제26조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남원시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관리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임대주택 분쟁 조정서(제17조 관련)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신청내용				
분쟁 조정내용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7조 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제26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위 대리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미만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
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15. (생략)

<신설>

<신설>

 ----- 65제곱미터 미만 -----

--- 공동급수시설, 공동출입문
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경로당 보수

1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
실 등 시설의 개수·보수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
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
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후 제5조에 따른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축·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2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

-----.

④ -----
-----결정된 경우-----
-----해당-----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건축과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 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9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증명-----
붙여야-----.

④ -----
-----해당-----

-----따른-----

-----완료한-----

경우-----

-----붙여-----

⑤ (현행과 같음)

⑥ -----
-----등에-----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생략)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경험-----

5.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

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13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
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
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
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③ 삭제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
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세대 구성
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① -----

주택업무담당이-----.

② 간사는-----

-----.

③ 삭제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

② -----

있을 경우-----

③ -----

받은 경우-----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외 반려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당해 공동

-----.

-----있는 경우-----

-----.

④ -----작성된 경우-----
-----.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에게-----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없는 경우-----
-----.

제16조(조정외 반려 및 종결) ①

-----의결을-----
-----.

1.-----해당-----

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때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때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

6.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

② (생략)

제17조(조정)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2.-----불분명한 경우
우

3.-----
-----사건인 경우

4.-----
-----계류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6.-----
-----성립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락한

경우-----
-----발급하여야-----

-----부결된 경우-----

-----있는 경우-----

제18조(조정의 효력) ① -----

-----수락한 경우-----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19조(비용부담)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 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비용부담) ① -----

-----필요한

-----위원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②-----
-----부
담 중-----

-----.

③-----
-----필요한 금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
-----개최한 경우-----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결서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조정위원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조정사항은-----
-----모두가-----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예외로 한다.

제2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호선(互選)한다.

③ -----사람으로 시장이 각-----

-----다
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 5. (생략)

④ 분쟁대상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각각 1명으로 한다.

⑤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

1. ~ 5.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⑥ -----전임자 임기-----.

제25조 삭제

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
환 가격에 관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및 주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
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② (생략)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
되지 않은 심사위원회, 분쟁조
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 등) ① -----
-----등
은-----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준용규정) -----규
정되지-----

-----.

제28조(시행규칙) ---조례 시행-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95 호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 중 “남원시의”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할”을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로, “의하여 그 지출에”를 “따라 지출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은 이를”을 “사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법」 및 그”를 “「하수도법」 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나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을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으로, “처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를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13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 중 “특별회계는”을 “특별회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를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

계”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을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출로 인한”을 “지출에 따른”으로, “사업년도내”를 “사업연도 내”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순서로 이를”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의 적립

제15조제2호 중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을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관리책임자”를 “관리 책임자”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언어”를 “받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자”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매 사업연도의”를 “사업연도마다”로,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를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12월말까지 업무상황은 다음년”을 “12월31일까지 업무상황은 다음 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 보고인 경우에는”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는”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를 “제2호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원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를 “설치는 규칙으로”로 한다.

제2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남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
-----다른 기업관리규정
을 제정할-----
-----받아야-----.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
은 법 제13조정에 따라-----

-----따라
지출을-----
-----.

② -----사업은

-----.

③ -----

-----그 밖에-----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따라-----

-----.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
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의 규정
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생략)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
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
자를 행하는 경우

3. (생략)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
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
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
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
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

1. -----
-----제2호나목에 따른

2. -----따라

3. (현행과 같음)

제11조(출자) 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

1. (현행과 같음)

2. -----
--하는-----

3. (현행과 같음)

② -----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
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생략)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다른-----

제12조(재정지원) -----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

-----특별회계로-----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2. (생략)
-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

- 1. · 2. (현행과 같음)
- 3. ----지출에 따른-----
-----사업연도 내-----

제15조(잉여금의 처분) -----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 1.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의 적립
- 2. -----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삭 제>

-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 5. (생략)

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 책임자-----
-----.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받아-----

-----.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회계처리상황-----

-----붙여야-----
-----.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3.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원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사업연도마다-----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은 다음 연-----
-----.

1. (현행과 같음)
- 2.-----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는-----
-----한정한다)
- 3.-----제2호 외-----

② -----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

제21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자문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설치는 규칙으로-----
--.

제22조(시행규칙) -----시행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조례 제 1196 호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을 “「지방공기업 법」 제5조”로, “그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사업이라 함은”을 “수도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급수구역은 남원시”를 “급수구역은 시”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기타 유사”를 “그 밖의 유사”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으로 보하도록”을 “국장으로”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 면”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한”을 “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로 한다.

제8조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남원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남원시조례”를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 조례”로, “일반회계와”를 “일반회계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제1호 규정”을 “제5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의 규정”을 “호”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자금에 대하여는”을 “출자금은”으로, “얻게”를 “받게”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특별회계”를 “해당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년”을 “해당 연”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을 “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의 명”을 “회계명”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 규정”을 “법 제27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를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다음년”을 “다음 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삭제

제16조제4호 중 “내지 제3호”를 “및 제2호”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설치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40조의 규정”을 “법 제40조”로, “언어”를 “받아”로, “내용은 남원시의”를 “내용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을 “법 제36조”로,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를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로,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월 보고인 경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를 “제2호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을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 ----- ----- - 「지방공기업법」 제5조----- ----- ----- ----- 운영----- ----- -----</p>
<p>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p>	<p>제2조(사업의 범위) ----- -----수도사업이란-----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p>

제3조(급수구역) 남원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남원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제3조(급수구역)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급수구역은 시-----

-----.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
-----그 밖
의 유사-----
-----1명-----.

②-----
-----국장으로-----
-----.

제5조(조직) ① -----

-----범위-----

-----.

②-----
-----없으면-----
-----.

제6조(인사) ① -----
-----공무
원의-----
-----.

②-----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남원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남원시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없으면-----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

제8조(기업관리규정) -----

-----받아야-----.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
-----.

②-----그 밖에-----
-----.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 조례-----
-----일반회계가-----.

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1. (생략)
-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 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해당 연-----

-----.

제13조(재정지원) -----
-----경우
에는-----
-----하는
재정지원은-----
-----.

- 1. (현행과 같음)
- 2. 제11조-----
--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

②-----
-----회계명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 조-----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 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 2. (생략)
-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 1. (생략)
-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에 감채적립금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

한정한다.

- 1. 해당
- 2. (현행과 같음)
- 3.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 1. (현행과 같음)
- 2. -----다음 연-----
- 3. 삭제

- 4. -----및 제2호-----
-----경우-----
-----에는-----

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
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
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한 중
요자산의 내용은 남원시의 규칙
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
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
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
산서
- 3.·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
도법」-----
-----설치·
운영-----.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받아-----
-----내용은-----
-----.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회계처리상황-----

-----붙여야-----.

1. (현행과 같음)
- 2.-----따른-----
--
- 3.·4. (현행과 같음)
- 5.그 밖에-----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해-----

-----.

- 1. (현행과 같음)
- 2.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
-----한정한다)
- 3. -----제2호 외-----

-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규칙 제 554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조정(안 별표)

- 총 계 : 1,055명 → 1,055명(변동없음)
- 본 청 : 512명 → 513명(+1명)
 - 산림과 : 23명 → 24명(+1명)
- 면 : 178명 → 177명(-1명)
 - 사매면 : 12명 → 11명(-1명)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규칙 제 555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무분장표(제3조 관련)

기관별	분 장 사 무
기 획 실	1. 시정 종합 기획·조정 2.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3. 대통령·지사·시장 지시사항 관리 4. 시장공약사항 관리 5. 국가예산확보 추진 총괄 6. 시정 현안사업 관리 7. 시의회관련 업무 8. 시정백서 발간 9.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10. 지역행복생활권 수립 및 추진 11. 창조지역사업 및 생활권협력사업발굴 12. 정부 3.0 추진 총괄 13. 시정의 주요정책 개발 및 조정 14. 동부권 균형개발 지원사업 15. 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관리 16. 시 상징물(BI, CI 등) 관리 17. 행정규제개혁 18.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업무 총괄 19. 중앙권한 및 공공기관 지방이양 20. 공무원 및 국민 제안제도 21. 일하는 방식 개선 22.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23. 세입·세출예산 편성 24. 예산운영 및 배정 25. 지방재정 공시 26. 재정계획 수립 27. 건전재정운영 지도 28. 재정분석 29. 교부세 신청관리 30. 경영수익사업 총괄(분야별 업무는 소관부서 추진) 31. 국고보조금·지방채·기금운영 관리 32. 사회단체보조금관리 총괄 33. 성인지 및 주민참여예산 34. 성과예산 35. 법무행정 종합 36. 조례·규칙·규정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37. 조례·규칙 공포 및 훈령 발령

기관별	분 장 사 무
	38. 자치법규 편찬 39. 소송업무 대응 및 진행상황 지도 40. 법령집·자치법규집·관보 등 관리 41. 법제자료 조사연구 42. 행정심판업무 대응 및 행정처분 청문 43.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44.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 45. 서울지역을 상대로 한 각종 경영수익 증대사업 46.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로개척 47. 재경향우에 관한 사항 48. 장학숙 운영 지원 49. 장학숙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50.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51.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52. 제4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지자체 규제 개선대책' 이행과제 관리 53.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54.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55.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56.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 제정 운영 57.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재 정 과	1. 지방세정 종합 기획·조정 2. 지방세제도 운영 3. 지방세 목표액 책정 4. 지방세 부과조정 5. 세무공무원 교육홍보 6.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7. 과세진적부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8. 지방세 종합전산망 운영 9. 지방세정 평가지도 10. 지방세 세원의 조사계획 수립 및 조정 11. 법인, 비영리 사업자, 그 밖에 단체에 대한 세무사찰 12.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 및 탈루세원 방지 13. 지방세 부정방지제도 14.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관리 15. 고지서 송달 지도점검 16.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17.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18. 징수업무 총괄·기획조정 19. 체납지방세 징수 20. 체납자 관리(관리카드 및 재산조회 등) 21. 체납처분(재산압류·공매·관허사업제한·형사고발·신용정보등록 등) 22.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23. 독촉·체납고지서 관리

기관별	분 장 사 무
	24. 결손처분 및 관리
	25. 경매(참가압류)교부청구 및 정산
	26. 지방세 징수유예(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27. 지방세 현금영수증 관리
	28.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카드수납, 자동이체, 인터넷수납 등)
	29. 국·도세 불입 및 지방세입 결산(지방세입 일계표 관리)
	30. 국·지방세 징수상황 관리
	31. 가산금 조정에 관한 사항
	32. 환급금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제증명 처리
	34. 읍면동 징수업무 지도
	35. 체납세 징수차량 관리
	36. 그 밖의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37.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체납액 징수 업무 지도
	38. 보조금 및 교부세 재정보전금 징수결의
	39. 채권 총괄관리
	40. 수입증지 관리
	41. 자금관리 및 배정
	42. 일반회계 세입결산
	43. 시금고 관리
	44.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45. 세외수입 수납관리
	46.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47. 세외수입 과년도의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8.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9. 사용료, 수수료 요율 조정·지도
	50.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사치성 재산 등)과세자료 조사·정비
	51.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부과
	52. 공동시설세(주택·건축물) 부과
	53. 건축물 일제조사
	54. 사권제한토지 및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사 및 정비
	55.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제공(주택, 토지분)
	56. 재산조회 회신
	57.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58. 개별주택 가격 조정·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59.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0.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
	6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고시
	62. 건물(일반건물) 기준시가 결정고시
	63. 지출에 관한 사항
	64. 일상경비 교부
	65. 세입세출외현금 정리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66. 원천세 징수불입

기관별	분 장 사 무
	67. 회계 지출증빙서 편철보관 68. 국비 전도자금 정리 및 결산 69. 세출예산 정리 70. 세출결산 71.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72. 회계관계 공인관리 73.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기타 계약 74.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관급자재 구입계약 75. 공사의 준공검사 및 물품검수 입회 76. 재물조사 실시 및 물품창고 관리 77. 물품정수 책정·배정업무 및 관리전환 78. 공사·용역 물품납품 실적증명 발급 79.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80.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81. 복식부기 재무결산 82. 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83.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 84. 국공유재산 관리 및 종합계획수립 85. 시유잡종재산 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 86. 시유재산 관리업무 87. 용도폐지 또는 변경, 권리보전 조치 88. 청사 전기, 위생, 냉난방 및 소방업무 전반 89. 청사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부속물 등) 90. 지방재정공제회업무 관리 91. 공유 영조물 및 손해보험 관리 92. 자체 방화관리 93. 관용차량 유지 관리 및 지도감독 94. 공유재산 환매취득 및 재산교환(매각) 95. 폐철도 부지관리(부지매입)
경 제 과	1. 안전경제건설국소관 행정 종합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3. 구도심 활성화 대책 4. 상공인 등 경제단체 지원협조 5.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 6. 담배소매인 지정 7. 통신·방문판매 신고업무 8. 노사 협력 및 노동조합 업무 9. 취업정보센터 운영 10. 실직자 대책 및 구인등록 11. 일자리 창출업무에 관한 사항 12.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지원 13. 저축업무에 관한 사항 14. 직업소개소 관리 15. 시장개설 허가 및 공설시장 관리 16. 지역상권 및 대형마트 관리

기관별	분 장 사 무
	17. 공설시장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18.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19. 유통업체 지도관리 20. 위조상표 지도단속 21. 대부업 및 복권업관련 업무 22. 산업엑스포관련 업무 23. 공산품 수출지원 24. 통상진흥업무 종합기획 25. 시장개척지원단 운영 26. 에너지관리 27. 연료수급대책 28. 전기·계량기관리 29. 광업권 업무에 관한 사항 30. 가스업 허가 및 석유판매업 등록관리 3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도관리 32. 화학물질 등 안전관리 지도 33. 전통공예(식도, 한지, 목공예품, 도자기 등)마케팅업무 추진 34. 전통산업(식도, 한지, 목공예, 도예 등) 육성 35. 지역혁신(목공예 등)산업 업무 36. 전통산업 지도 및 개발육성 37. 지역브랜드 보호 및 체계적 관리 38. 지역브랜드 창출 및 통합 39. 상표 권리화 40. 제조업체·고용업무 통계조사 41. 2차 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관리 42. 애향장려금 지급관리 43. 식품산업 총괄관리 44. 전략산업개발 및 육성 45. 산업정책 수립 46. 기계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47. 과학산업에 관한 사항 48. 산학협력·정보산업·지적재산권 관리 49.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 지원 50. 지역특화산업 발굴지원 51. 기술혁신에 관한 사항 52. 투자유치종합계획 수립 53.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54. SOC 등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관한 계획 수립 55. 민간투자사업의 자본유치를 위한 활동 56.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운영 57.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58. 투자유치 홍보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관리 59. 국내·외 투자유치박람회 참가 60. 국제규모의 대회(체육, 엑스포 등) 유치

기관별	분 장 사 무
	61.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부지매입 62.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입지 법률검토 63.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64.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65. 첨단산업 및 사무지원서비스업 등의 유치 66. 대기업 및 관련 협력업체의 유치 67. 유치기업 이전 및 투자·사무지원서비스업 보조금 지급 68. 유치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69. 기업진흥업무 종합기획 70.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7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지원관리 72. 공장설립 신고 및 공장등록에 관한 업무 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74.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협동화 추진관리 75.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76. 공산품 품질관리 및 지도단속 77.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kW이하)의 허가 및 변경허가 등(신규)
안전재난과	1. 재해·재난·안전관리 기획·운영·평가 총괄 2. 재해·재난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3. 재난관리 제도개선 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5.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과약 및 재난 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6.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 7.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8.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9.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10.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 11. 다중이용 시설물 점검 12.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 13.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및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14. 재난위험시설 해소 15. 생활안전시설 및 가스시설 안전진단 추진 16.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 17. 재난대비 도상 및 실제연습 실시 18.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지도 19.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 20.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21. 안전문화운동 22. 기상정보 운영 23. 방재종합계획 수립 24. 수해복구계획 수립 25. 재난위험요소 해소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26.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협의 및 관리 감독 27. 지역별안전도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기관별	분 장 사 무
	28. 방제시설기준의 설정·운영·관리 29. 지역자율방범단 구성·운영 30.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31.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대응 방법의 개발·보급 32. 자연재난복구계획 수립 3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지도감독 34.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35.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 취약시설의 관리 36.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37. 피해원인 및 피해조사·분석·침수흔적도 작성 38. 재난발생 빈도 및 특성 분석 39.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40. 내진·내풍에 관한 위원회 구성·운영 및 협의 41. 풍수해 표준매뉴얼 작성 및 주민행동요령 42. 수방자재 확보·비축 및 현대화 추진 43.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44.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교육 및 홍보실시 45.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46. 전시대비 인력동원계획 수립 4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종합상황실 운영 48. 민방공 경보망 운영관리 49. 인력동원자원 조사 50.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51. 전시대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인력·물자·시설동원 조정 통제 52. 을지연습·화랑훈련 주관 53. 민방위대 조직·편성 운영 54. 민방위시설 보호 및 장비 유지관리 55. 민방위대 동원 및 자원 파악관리 56. 민방위 교육·훈련 5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지도 58. 민방위사태하의 주민통제 및 소산수송 59. 주민신고망 운영 및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60. 공익근무요원 소집관리 61.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62. 충무계획 작성·운영 63.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지원 및 총괄 64. 안전총괄 관련 업무 전반 65. 안전신고시스템 관리, 안전신고 모니터링, 안전신고 처리현황 파악 66. 승강기 안전점검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규칙 제 556 호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옥외영업장 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관광특구
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소 및 유원시설업
3. 지사 또는 시장이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4조에 따른 영업은 예외로 한다.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영업시간의 제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
-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
- 3.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은 외부의 환경이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구조여야 하며, 미관상 해가 없는 청결한 구조여야 한다.
2.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라.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훈령 제 346 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부서별) 개정(안 별표 2부터 안 별표 5까지)

○ 안전재난과 : 13명 → 13명(부서정원 변동없음)

- 행정·시설 9급 1명 → 행정·시설 9급 0명(-1명)
- 행정·시설·방재안전 9급 0명 → 행정·시설·방재안전 9급 1명(+1명)

○ 산림과 : 23명 → 24명(+1명)

- 행정·농업·녹지 8급 0명 → 행정·농업·녹지 8급 1명(+1명)

○ 사매면 : 12명 → 11명(-1명)

- 행정 8급 1명 → 행정 8급 0명(-1명)

남원시 고시 제2015 - 66호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제9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30조와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5년 9월 25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사업
나. 명 칭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보강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210,515㎡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
1) 공원결정 내용
1) 공원결정 내용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	210,545	-	210,545	전라북도 고시 제2012-200호 ('12.08.03)	변경없음

2) 공원조성계획 조서

시설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10,545	210,545	359.3	418.9	
공원 시설	소 계	17,931	20,719	359.3	418.9	시설율 : 9.84%
	1. 도로 및 광장	7,302	8,646			
	2. 조경시설	1,657	2,386			
	3. 휴양시설	4,811	4,811			
	4. 운동시설	115	115			
	5. 교양시설	432	432			
	6. 편익시설	2,880	3,595	30.4	90.0	
	7. 관리시설	734	734	328.9	328.9	
8. 녹지 및 기타		192,614	189,826			녹지율 : 90.1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산림과)

나.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51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16.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없음

7.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5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9월 25일

남원시 예규 제 14 호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각 부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권한 중 세외수입 체납사무의 인계인수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세외수입 체납사무”란 독촉기한이 만료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모든 부서의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에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계인수 시기와 방법) ① 해당 부서장은 체납된 지난 연도 세외수입을 회계연도 출납 폐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재정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과한 회계연도 출납 폐쇄일 현재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독촉고지서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관된 것으로 본다.

③ 재정과장은 인수받은 내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인계부서에서는 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체납 자료의 인계인수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으로 이관 처리한다.

제5조(제외대상) ①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 및 「감사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인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계류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재정과장에게 인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과로 최초 이관되는 해에는 조직 신설 3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한다.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남원시
(부서명)

사무인계인수서

년 월 일 현재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한 자의
체납 자료를 년 월 일자로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인계자	(인)
인수자	(인)

확인자	
인계부서	(인)
인수부서	(인)

사무인계인수사항

항 목

1. 과년도 체납액 인계인수 총괄표
2. 과년도 체납액 인계인수 세부사항
 - ① 과목별 체납 현황
 - ② 과목별 결손 현황
 - ③ 세외수입 체납자 내역
 - ④ 세외수입 체납자 분납 내역
 - 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자 내역
 - ⑥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중인 사건 내역
 - ⑦ 공매물건 관리 내역
 - ⑧ 교부청구 관리 내역
3. 사무분장표
4. 서류 및 장부 목록
5. 중요 진행사항 목록
6. 직무편람

1. 과년도 체납액 인계인수 총괄표

◎ 체납 및 결손내역과 체납정리표 (총괄)

(단위 : 명, 건, 원)

구분	인원	건수	체납·결손액			비고
			계	본세	가산금	
계						
체납						
결손						

◎ 인계인수 제외대상 체납정리표(총괄)

(단위 : 명, 건, 원)

구분	인원	건수	체납액 또는 정리채권			비고
			계	본세	가산금	
계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진행)						
비송사건						
기 타						

◎ 송달근거 확보(총괄)

(단위 : 매)

합계	배 달 증 명				직접송달	공시송달
	소계	최초고지	독촉고지	납부최고		

◎ 체납처분 관련 내역 또는 대장(중복기재)

(단위 : 건)

부동산압류	금융자산압류	급여압류	자동차압류
그 밖에 자산압류	공매의뢰	교부금청구	결 손
출국금지요구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제공

2. 과년도 체납액 인계인수 세부현황

① 과목별 체납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구분	인원(명)	건수(건)	체납액(원)			그 밖에 사항
			계	본세	가산금	
합 계						
00과태료						
00사용료						
00변상금						
00강제이행금						
0000(기타과목명)						

※ 작성요령

-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과목별 체납현황】 으로 작성.

② 과목별 결손(사후관리)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구분	인원(명)	건수(건)	결손액(원)			그 밖에 사항
			계	본세	가산금	
합 계						
00과태료						
00사용료						
00변상금						
00강제이행금						
0000(기타과목명)						

※ 작성요령

-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과목별 결손현황】 으로 작성.

③ 세외수입 체납자 내역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체납자		회계 과목	납기	체납세액(원)			압류사항		특이 및 특려 사항	공매 의뢰 여부	교부 청구 진행 여부	관허 사업 제한 여부	재산 소유 여부	그 밖에 사항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계	본세	가산금	압류 일자	압류 물건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고액(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으로 작성.
2. 과목은 과목코드가 아닌 “과목명” 기재, 납기는 ‘부과 년/월’ 기재.
3. 체납액은 병기목을 포함한 0/0일 현재 본세액 및 (중)가산금을 ‘원’단위로 기재.
4. 압류사항은 압류일자와 물건을 “00년 00월 00일 부동산, 00년 00월 00일 금융 자산, 00년 00월 00일 차량” 등으로 기재하되, 부동산과 금융재산, 차량을 중복 압류한 경우에는 모두 기재.
5. 공매의뢰여부는 “공매의뢰일자”를 기재 - (예) “00년 00월 00일 부동산”
6. 교부청구진행여부는 최고서, 낙찰기일통보, 배당기일 통보 등에 따른 최종 교부청구 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00년 00월 00일’ 기재
7. 관허사업 제한여부는 ‘00년 00월 00일 00구 00과 유흥음식업’ 등으로 기재
8. 무재산일 경우에는 ‘재산조회일자’를 기재 - (예) 부. 0000년 00월 00일
9. 그 밖의 사항은 연락처(전화, 팩스, 이동통신 등) 및 특이사항 기재

④ 세외수입 체납자 분납자 내역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체납자		과목	납기	체납세액(원)			압류사항		분납진행사항 및 월분납금	그 밖에 사항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계	본세	가산금	압류 일자	압류 물건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세외수입 체납자 분납 현황】으로 작성.

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자 내역**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채납자		과목	납기	채납세액(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일	채권 신고일	그 밖에 사항
	성명	생년월일			계	본세	가산금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자 현황】** 으로 작성.

⑥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중인 사건 내역**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채납자		과목	납기	채납세액			소송내역			그 밖에 사항
	성명	생년월일			계	본세	가산금	사건번호	소송계기일	소송 진행상황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중인 사건 현황】** 으로 작성.
2.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제외(분임부서에서 관리), 소송 등이 확정된 이후 다음 연도에 이관 실시

⑦ 공매물건 관리 내역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채납자		공매 의뢰일	공매물건 관리번호	의뢰 기관	공매물건	채납액(원)				그 밖에 사항
	성명	생년월일					과목	과세연월	채납 건수	채납 세액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공매물건 관리 현황】 으로 작성.
2. 의뢰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00지사로 기재
3. 공매물건은 토지, 건물, APT, 공장, 상가로 표시
4. 채납건수 및 채납세액은 총 채납건수와 총 채납세액을 원단위로 기재
5. 과세연월은 채납자에 최초로 부과된 건의 연월을 기재

⑧ 교부청구 관리 내역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경매법원		경매물건	채납자		교부청구		배당일자	그 밖에 사항
			법원	담당부서		성명	생년월일	청구일자	청구금액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교부청구 관리 현황】 으로 작성.
2. 법원 등에 채권계산서를 이미 제출한 채납자는 배당일자를 반드시 기재.

4. 서류 및 장부 목록

부서	해당 연도	서류장부명	부수	보존연한	비고

5. 중요 진행사항 목록

진행				진척상황	추가조치사항
구분	일자	진명	내용		

6. 직 무 편 랐

업 무 명					
업무개요			근거법규		
<input type="checkbox"/> 업무처리 절차					
일련번호	업무내용	처리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및 관련법규	관련부처 (협의·협조)	결재자(전결)
<input type="checkbox"/> 처리흐름도					
<input type="checkbox"/> 부 과 근 거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추진실적		
▷ 부과근거 규정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참고 자료		
▷ 체납처분 (준용)규정			<input type="checkbox"/> 업무 인계인수 내역		
▷ 결손처분 규정					
			인계인수일 인계자 : (인)		
▷ 행정제재 규정					
			년 월 일 인수자 : (인)		